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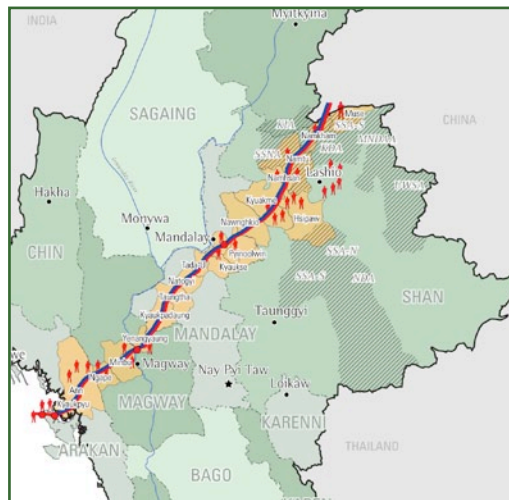
개요

- I. 서론
- II. 수송관 노선, 관련기업 및 프로젝트 진행사항
- III. 프로젝트 보안
- IV. 인권 침해 기록 및 관련 국제, 국내 법 기준: 업데이트 보고
- V. 구체제도에의 접근성
- VI. 영향평가와 주의 절차
- VII. 민족 간 긴장상태의 심화: 분쟁지역에서의 기업활동
- VIII. 수익창출과 권리
- IX. 조치 및 권고사항

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

이 보고서는 버마-중국 가스 및 석유 수송관에 대한 최신 입수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arthRights International은 목격자들의 증언, 유출된 문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법과 기준, 버마 법에 의거하여 수송관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성 및 의무를 분석합니다. 이 보고서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버마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향상시킬 방안을 고찰하고 주요 당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I. 서론



See page 5 for full map

버마(미얀마)는 현재 매우 복잡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논란이 되었던 전국 투표가 시행되었고 이후 반정부 민주화운동 세력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2011년 1월, 22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고 이후 군대 내에서 고위 장성들의 요직 재배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체제 역시 군이 이끌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일부 산업분야에 대한 당국의 민영화 조치로부터 수혜를 얻은 것은 일부 기득권층이었을 뿐입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아시아의 상장기업과 국영기업들의 주도로

상당한 국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실질적으로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버마 동부에서는 격렬한 무장투쟁이 지속 중이고 버마 군사정부와 몇 소수민족 군대간의 휴전협정이 결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권상황은 좋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대한민국, 인도의 다국적 기업들이 버마 정부 소유의 미얀마 석유 가스 공사 (MOGE), 버마 기업들, 그리고 버마 정부군과의 협력 아래 추진 중이며 버마 내 최대규모에 해당하는 두 가지 에너지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의 명칭은 Shwe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버마-중국 석유 운반 프로젝트이며 이 보고서에서는 두 프로젝트를 통틀어 “버마-중국 수송관”이라 칭합니다. 버마-중국 수송관은 버마로부터 가스를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석유를 버마를 통해 중국으로 운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수송관은 두 주, Arakan (Rakhine)과 Shan, 그리고 버마의 두 지역구인 Magway와 Mandalay를 따라 산림밀집도가 높은 산맥과 건조 평지, 강, 정글, 그리고 버마족과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마을과 타운쉽(Township)을 통과하게 됩니다. 수송관은 현재 공사중이며 주요 소비층은 중국의 연안지역 업체와 개인소비자이고, 이를 통해 버마정부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득을

이 보고서는 버마의 산업 개발 공사와 관련한 환경 및 인권상황에 초점을 두는 일련의 EarthRights International 보고서 가운데 첫번째입니다.

FURTHER READING

Broken Ethics, The Norwegian Government's Investments in Oil and Gas Companies Operating in Burma (Myanmar), EarthRights International (2010)

Corridor of Power, China's Trans-Burma Oil and Gas Pipelines, The Shwe Gas Movement (2009)

A Governance Gap, The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hold Korean Corporations Accountable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Violations in Burma, EarthRights International (2009)

Report to the South Korean National Contact Point Regarding Daewoo International and Korean Gas Corporation, EarthRights International (2008)

Supply and Command, Natural Gas Development in Western Burma Set to Entrench Military Rule, The Shwe Gas Movement (2006)

The Shwe Gas Bulletin, Arakan Oil Watch

Dodgy Deals, Shwe Gas and Pipeline Projects - Myanmar, BankTrack

창출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보고서는 버마 내부로부터의 조사 그리고 EarthRights와 파트너들이 입수한 유출 문서를 근거로 수송관 공사로 말미암은 인권침해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EarthRights는 공사와 관련하여 대량의 토지 몰수를 발견하였고 영향받은 지역사회와의 유의미한 협의와 동의가 전혀 없었으며 강제 노동 및 기타 국제 및 버마 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실이 있음을 조사했습니다. EarthRights는 이러한 위반사항들을 증명하는 기업 공모의 증거물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외 관련 기업들은 주요 국제기준을 위반했으며 버마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증거에 의하면 프로젝트 부근의 지역사회들은 이 수송관 공사를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직 프로젝트 공사와 무장투쟁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을만한 증거는 없지만, 공사가 버마 정부군과 특정 소수민족 무장그룹 간의 새로운 무장투쟁이 벌어질 수 있는 Shan 주로 확장되면 두 진영 간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긴장감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군은 군사갈등 시 투입을 목적으로 이 지역 거주민을 강제로 징집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EarthRights는 중국 전국 석유 공사 (CNPC) 간의 비공개 생산물 분배계약(Product Sharing Contract)을 입수했으며, 이 계약에 따르면 CNPC는 현재로서는 버마-중국 수송관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개발 공사 해안 시공과 관련하여 MOGE 관리들에게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계약 서명과 생산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arthRights는 이 지급금액과 그 내용이 이전에 공개된 바 있는 버마의 자원 개발 계약조건과 유사하다는 점으로부터 미루어보아 버마-중국 수송관 공사 계약서 역시 이러한 형태를 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약서는 공공에 공개되지 않은 채 계속 비밀로 놓여 있습니다. 상기 조건과 유사한 조건이 적용된다면, 버마-중국 수송관 공사자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MOGE에게 총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현찰을 분할 지급하였을 것입니다.¹

과거의 관례로 볼 때, 버마의 군사정부는 버마-중국 수송관을 통해 얻은 막대한 금액을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EarthRights는 이전의 천연가스 수익금이 싱가포르의 사립은행 계좌로 유입된 과정을 기록한 바 있으며 버마-중국 수송관은 역시 유사한 형태의 정부부패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합니다.² 버마는 여전히 자원관련 수익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역량, 정치적 공간(political space), 그리고 관료와 시민사회 구성의 자율성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버마 자원개발산업 부문에 대한 아시아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버마-중국 수송관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고 에너지 부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설적이고 목표지향적(targeted)인 조치들을 권고합니다. 현재 버마 내 에너지 공사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감안한다면, 버마 정치권은 버마 국민이 공사 개발 결정에 뜻깊게 참여하고 천연자원 수익금이 책임성 있게 관리되며, 군부 영향 아래 진행되는 공사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조치들이 충분히 취해지기 전까지는 석유와 가스분야 개발에 대한 즉각적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II. 수송관 노선, 관련기업 및 프로젝트 진행사항

버마-중국 수송관은 각기 다른 계약서와 소유구조를 가진 수 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건설로는 심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육지 가스 터미널, 서부 버마에서 중국까지의 육지 천연가스 운반 수송관, 서부 버마에서 중국까지의 육지 석유 운반 수송관

생산 공유 계약서. 달리 표시되기전에는, 모든 비밀 문서, 필드 보고서, 인터뷰, 편지문들은 EarthRights International이 소장하고 있음.

2 EARTHRIGHTS INTERNATIONAL 작성, TOTAL IMPACT: THE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FINANCIAL IMPACTS OF TOTAL AND CHEVRON'S YADANA PROJECT IN MILITARY-RULED BURMA (MYANMAR), 43 (2009년 9월), <http://www.earthrights.org/publication/total-impact-human-rights-environmental-and-financial-impacts-total-and-chevron-s-yadana>에서 볼 수 있음; 다음에도 참조 Matthew Smith, *Stop the Looting of Burma*, THE WALL STREET JOURNAL, 13, 2011년 2월 28일 (인쇄판).

1 EarthRights International이 입수한 비밀

등이 있습니다.

Shwe 천연가스 필드

Shwe 천연가스 필드는 Shwe, Shwe Phyu, 그리고 Mya 필드에서 각각 발견된 세 개의 가스 채광 구를 포함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Shwe 필드”라 지칭합니다). Shwe 필드는 버마의 Arakan 해안의 블록A-1과 A-3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이 이 블록들의 주요 소유주이자 운영권자이며, 대우는 한국의 또 다른 거대기업 POSCO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우는 이 가스 필드에 여러 소수 파트너들을 불러들였으며 MOGE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1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유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Shwe 필드 소유분(Shwe 컨소시엄)

회사	지분
Daewoo International	51%
ONGC Videsh Ltd.	17%
MOGE	15%
KOGAS	8.5%
GAIL	8.5%

컨소시엄은 또한 Shwe Offshore Pipeline Joint Venture Company를 통해 해안 수송관을 운영할 것입니다. 컨소시엄은 80km/110km 규모의 해저 수송관 공사와 대부분의 해안 천연가스 생산 시설의 공사를 위해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14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³ 수송관은 2013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⁴ 버마 군사정부는 Shwe 필드의 가스 구매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받았지만 2008년 6월에 최종적으로 중국에 구매권을 부여하여 앞으로 30년간 중국에 6.5tcf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수출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Shwe 육지 가스 수송관

육상에서의 Shwe 가스 수송관은 해안 수송관 천연가스 터미널에서 시작하여 중국의 연안성 국경까지 무려 793km에 달합니다.⁵ 육지 가스

수송관은 2013년 3월에 완공예정이고 총 공사비는 미화 10억 4천만달러에 달합니다. CNPC가 설립한 홍콩소재 South-East Asia Pipeline Company Limited (SEAP)와 Shwe 컨소시엄 기업들이 육지 수송관 공사와 운영을 함께 담당할 예정입니다.⁶

육지 천연가스 수송관 소유분

회사	지분
CNPC	50.9%
Daewoo International	25.04%
ONGC Videsh Ltd.	8.347%
MOGE	7.365%
KOGAS	4.1735%
GAIL	4.1735%

육지 원유 수송관

버마 육지의 거의 전체를 관통하는 원유 수송관이 천연가스 수송관과 병행하여, 그리고 연안성에서 Kyaukphyu와 Ruili를 연결하는 도로 및 열차선 공사와 함께 건설됩니다. 건설은 중국의 CNPC가 수송관 공사를 담당하며 완공 후에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중국 남서부지역까지 석유를 이 수송관을 통해 운반될 예정입니다.⁷ 또한 건설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규 심해 원유 부하 항만과 버마의 Maday 섬에서 석유 저장시설 공사가 진행됩니다.⁸

중국 전국 석유 공사(CNPC)는 전체 소유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South-East Asia Crude Oil Pipeline Ltd. (SEACOP)를 통해 석유 수송관의 50.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마의 국유회사 MOGE가 나머지 49.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⁹ CNPC와 버마 정부와의 2009년 12월

6 동일; ONGC Videsh, *Assets*, 다음에서 열람: <http://www.ongcvidesh.com/Assets.aspx> (마지막 방문일, 2011년 3월 10일) (“육지 파이프라인 회사는 홍콩에서 설립되고 등록됨. 기타 파트너의 소유권은 각각 CNPC-South-East Asia Pipeline Company Limited (SEAP), 중국- 50.9%, 대우- 25.04%, MOGE, 미얀마 7.365 %, GAIL, 그리고 KOGAS 4.1735%”).

7 *Myanmar, Thailand work for building major deep seaport*, CAEXPO, 2010년 12월 2일, 다음에서 열람: http://eng.caexpo.org/news/t20101202_91503.html.

8 Xinhua Economic News, *Sino-Myanmar Crude Pipeline Memo Signed*, DOWNSTREAM TODAY, 2009년 6월 19일, 다음에서 열람: www.downstreamtoday.com/%28X%281%29S%28jcjgmovup1ts42foqv afny55%29%29/news/article.aspx?a_id=16796&AspxAutoDetectCookieSupport=1.

9 CNPC, *Rights and obligation agreement signed of Myanmar-China Crude Pipeline*, Dec. 21, 2009, 다음에서 열람: <http://www.cnpc.com.cn/>

3 현대 중공업, *Hyundai Heavy Signs US\$1.4 Billion Myanmar Gas Plant Deal*, 2010년 2월 23일, 다음에서 열람: http://english.hhi.co.kr/press/news_view.asp?idx=531&page=1.

4 ONGC Videsh, *Assets*, 다음에서 열람: <http://www.ongcvidesh.com/Assets.aspx> (last visited March 10, 2011).

5 CNPC, *Myanmar-China Oil and Gas Pipeline project commenced*, 2010년 6월 4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cnpc.com.cn/>

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

EarthRights International
2011년 3월

합의서에 따르면, SEACOP
은 수송관의 공사와 운영을 맡고
버마정부는 수송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¹⁰ 이러한 보안에 대한
합의는 EarthRights가 입수한CNPC와
MOGE 사이의 비밀 계약과 일치하며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arthRights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버마-중국 수송관과 관련된
토지 취득과 한국, 중국 석유회사
임직원들의 공사지역 방문 안내
등에서 Asia World Co. Ltd (Asia
World) 라는 기업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¹ Asia World
는 버마에서 잘 알려진 기업으로 버마
군사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¹²
이 기업은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이자 악명높은 마약거래상
Lo Hsing Han의 아들이기도 한 Tun
Myint Naing(별칭 Steven Law)의
주도 아래 버마 내 건축사업, 항만관리,
수출입, 소매업 등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정부에 의하면
Steven Law와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버마정부의 돈세탁업자들이며 국제
마약거래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¹³
이 기업 유럽연방과 미국 제재자
목록에 올라있으며,¹⁴ Steven Law와
싱가포르계 부인 Cecilia Ng은 “블랙
리스트”라고도 알려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 특정지정인(SDN)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¹⁵

10 동일.

11 인터뷰 #004-2010, #005-2010 #009-2010,
#014-2010, #021-2010 참조, 버마 Kyaukpyu
에서.

12 미국 재무부 버마 제재조치, “Steven Law
Financial Network” (2008) 참조, *다음에서 열람*: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burma.aspx>.

13 동일: Barry Meier, *Owner of Exploded Rig is Known for Testing Rules*, THE NEW YORK TIMES,
2010년 7월 7일 참조, *다음에서 열람*: <http://www.nytimes.com/2010/07/08/business/global/08ocean.html?pagewanted=all>;
Thomas Maung Shwe, *Swiss Deny TransOcean's Work for Drug Lord's Violated Sanctions*, MIZZIMA
NEWS, 2010년 7월 19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mizzima.com/news/world/4126-swiss-deny-transoceans-work-for-drug-lords-violated-sanctions.html>.

14 미국 재무부, *상기 주 12*;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Consolidated
list of persons, groups, and entities subject to
EU financial sanctions*, *다음에서 열람*: http://ec.europa.eu/external_relations/cfsp/sanctions/consol-list_en.htm (2011년 3월 10
일 마지막 방문).

15 미국 재무부,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2011년 2월 15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treasury.gov/ofac/downloads/t11sdn.pdf>.

수송관 경로

현재 수송관 공사는 Arakan 주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Kyaukpyu
에서는 근로자들이 이미 공사 관련
거주처를 짓고 토지를 개간하였으며
가스 터미널 기초공사도 마쳤습니다.¹⁶
터미널 지역만으로도 수많은 에이커의
토지가 필요합니다.¹⁷ 나아가 해안에서
내륙의 가스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Malakyun 마을의 양쪽에 도로
건설도 시작되었습니다. Kyaukpyu
에서는 근로자들이 항만 기초공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지역주민 사이에 항만공사 때문에
300가구를 강제 이주시킬 것이라는
소문을 돌고 있는 가운데 아직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¹⁸
항만공사지역은 현재 공식적으로
차단되어 지역주민은 건기에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나루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aday
섬에서는 근로자들이 정박시설을
건축하고 있고 석유저장 시설물의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섬 내에
위치할 두 곳의 새로운 경찰서는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은
공사를 위해 30-40채의 집이 철거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 통지를 받은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¹⁹

수송관 노선 최동쪽 Magway
지역구의 Yenangyaung시와
Mandalay 지역구의 Patheingyi
시 등 다른 공사지에서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제보자에
의하면 건설 기업은 Yenangyaung
시에서 장마철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Wetmasut 마을을 관통하는
Irrawaddy 강 공사를 끝마치려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²⁰ 공사는
Mone 개천 근처 Irrawaddy 강의 서쪽
강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Wetmasut 지역주민은 이 지역에서도
근로자들이 수송관 시설물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²¹ EarthRights
는 또한 Patheingyi 타운쉽에서도
수송관과 관련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²²

16 필드 보고서, 2011년 2월. 2011, 버마
Kyaukpyu에서.

17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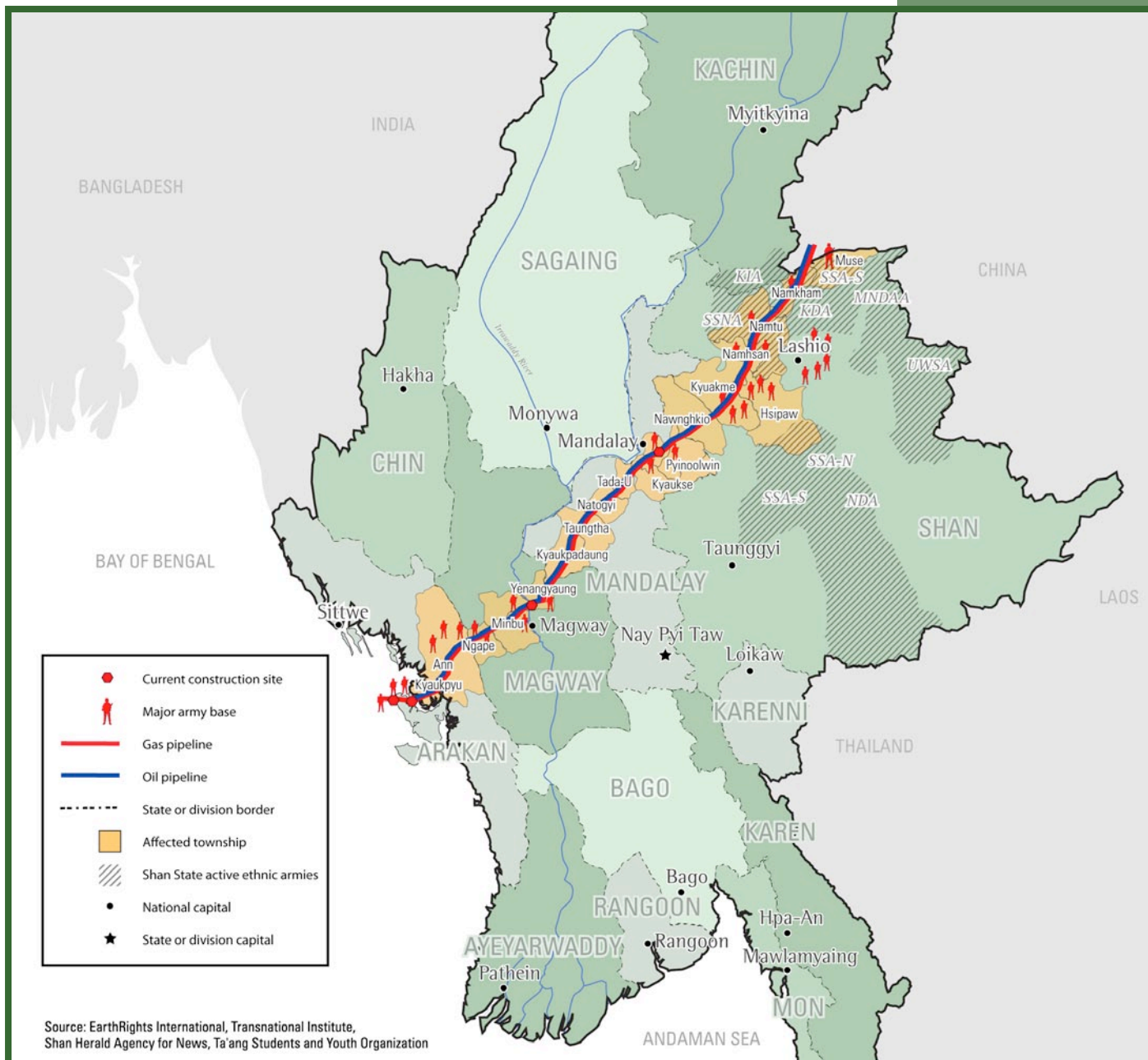
18 인터뷰 #014-2011 버마 Kyaukpyu에서.

19 인터뷰 #004-2010, #007-2010, #008-2010,
#009-2010 버마 Kyaukpyu에서.

20 필드 보고서, 2011년 2월, 버마 Magway에서.

21 동일.

22 필드 보고서, 2010년 11월-12월, 버마



III. 프로젝트 보안

중국-버마 수송관 프로젝트는 특정 프로젝트 공사지역에서 육군, 해군, 경찰력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²³ EarthRights의 조사에 의하면 Arakan 주에서 중국 국경 사이의 버마-중국 수송관 지역에 최소 28개의 버마 육군 대대가 주둔해 있으며 이들 일부는 수송관 프로젝트 공사가 시작된 후 새로이 배치되었습니다.²⁴ Arakan 주의Kyaukpyu 타운쉽(Township)에서만도 3대대가 주둔해 있으며 이들 가운데 LIB 542와 LIB 543은 육지 가스 터미널 부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²⁵ 이외에도 해군이 공사 탐사지역을 포함한 Maday 섬 전반에서 순찰을 늘리는 등 Kyaukpyu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²⁶ Maday 섬에는 원래 주둔 경찰서가 없었으나, 최근 두 곳에 새로운 경찰서가 설치되었습니다.²⁷ 또한 버마 해군 함정들이 대우 인터내셔널의 Kyaukphyu 탐사선을 호위하기도 했습니다.²⁸

25 인터뷰 #010-2009, #011-2009 버마 Kyaukpyu에서.

26 인터뷰 #017-2010, #054-2010 버마 Kyaukpyu에서; 인터뷰 #051-2010 버마 Minbu에서.

27 인터뷰 #017-2010, #049-2010, #054-2010 버마 Kyaukpyu에서.

28 Myanmar brings warships to explore Bangladesh waters, THE DAILY STAR (2008년 11월 3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thedailystar.net/story.php?nid=61625>; Matthew Smith, Daewoo Aggravating Bay of Bengal Tensions, THE IRRRAWADDY, 2008년 11월 25일.

Mandalay에서.

23 인터뷰 #017-2010, #049-2010, #054-2010 버마 Kyaukpyu에서; #051-2010 버마 Minbu에서.

24 2008년부터 버마에서 EarthRights가 실시한 여러 인터뷰.

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

EarthRights International
2011년 3월

버마 육군 주둔상태가 오래전부터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지속되어온 Shan주에서는 수송관 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군대의 투입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Kachin 독립군(KIA)의 한 고위관에 의하면 버마 육군이 북부 Shan 주에 군대 투입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이는 언론보도와도 일치한 내용입니다.²⁹ EarthRights는 노선 부근의 대대 배치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현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EarthRights는 CNPC가 버마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버마 군부가 보안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CNPC와 MOGE 간에 비밀리에 체결된 공식 계약들을 입수했습니다.³⁰ 현재로서는 이

제공하는데 사용된 버마 정부의 경비는 미얀마 외국무역은행(Union of Myanmar Foreign Trade Bank)이 정한 환율로 산정해 미국 달러화로 “배상한다(shall be reimbursed)”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³²

버마 군대의 개발 공사와 관련한 안전조치는 역사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유린으로 이어져 왔으며 버마-중국 수송관 공사도 예외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EarthRights에 접수된 미확인 제보에 따르면 수송관 노선에 인접한 Shan 주 지역주민이 버마 군대의 연관 민병대에 징집되어 이 지역 보안제공 기구의 일원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³³ EarthRights는 또 이와 유사한 민간-군대 훈련이 Arakan 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³⁴ 유엔 버마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의 2010년 보고서 또한 버마-중국 수송관 공사지역의 강제 노동 실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³⁵

CNPC는 2009년 “미얀마 정부는... 수송관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권리, 의무 합의서를 MOGE와 체결했다고 발표함으로써 MOGE와의 보안 제공 관련 합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³⁶

IV. 인권 침해 기록 및 관련 국제, 국내 법 기준: 업데이트 보고

버마 군사정부는 오랫동안 석유와 가스 탐사를 포함한 천연자원 개발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폭력을 행사해왔음은 상세히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³⁷



PHOTO: Light Infantry Division #88, near pipeline route, Magway Division, Burma (Oct. 2009)

계약들 버마-중국 수송관과 관련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보안 제공 조항은 MOGE가 외국 석유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들 계약서에 따르면, 버마 정부 소유의 기업인 MOGE는 “안전도모와 권리, 지역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에서...시설물 설비와 인력을 금전적 지원을 받아 [제공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³¹ 계약서는 또한 보안 서비스를

²⁹ 인터뷰 #080-2010 태국 방콕에서; Sai Zom Hseng, *Cease-fire Groups Wary as Burmese Army Buildup Continues*, THE IRRRAWADDY, 2011년 3월 2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irrawaddy.org/article.php?art_id=20862.

³⁰ 비밀 생산 공유 계약서, 상기 주 1.

³¹ 동일. 43.

³² 동일. 43-44

³³ 인터뷰 # 081-2010 태국 방콕에서.

³⁴ 인터뷰 #049 버마 Kyaukpyu에서.

³⁵ U.N. 인권 위원회,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27, U.N. Doc. A/HRC/13/48 (2010년 3월) (Tomas Ojea Quintana, Special Rapporteur 작성), 다음에서 열람: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3session/A-HRC-13-48.pdf>.

³⁶ CNPC, *Rights and Obligations Agreement Signed of Myanmar-China Crude Pipeline*, 2009년 12월 1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cnpc.com.cn/en/press/newsreleases/>

³⁷ EarthRights International의 해당 출판물은 다음에서 열람: <http://www.earthrights.org/publications>; 다음도 참조 ARAKAN OIL WATCH, *BLOCKING FREEDOM: A CASE STUDY OF CHINA'S OIL AND GAS INVESTMENT IN BURMA*, 7 (2008년 10월) 다음에서 열람: <http://www.arakanoilwatch.org/index>.

Shwe 가스과 석유 수송관 공사는 이미 국제법과 버마법의 심각한 위반에 이바지했습니다. Shwe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땅과 생활터전에의 접근을 상실하고 특히 수송관이 민족 간 갈등과 폭력이 두드러진 지역에 도달함에 따라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목격자 증언은 수송관 노선 주변에서의 경향과 상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현장의 상황을 총망라하는 것은 아니며 독자는 인권유린 사례가 추가로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토지 몰수, 불충분한 보상, 그리고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사전 동의 (free and informed prior consent) 의 부족이 가장 흔히 일어나고 있는 침해사항입니다. 이외에 이 공사와 관련해 기록된 심각한 침해 사례로는 정부 기관원들에 의한 협박과 중용, 강제 구금, 고문, 강제 노동 등이 있습니다.

강제 구금과 고문

정부의 승인 아래 가해지는 고문³⁸과 장기간의 강제 구금³⁹은 국제관습법을 위반하며 버마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법적 의무가 지니고 있습니다. 버마의 국내법 역시 고문을 금지하고 있고⁴⁰ 강제 구금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⁴¹

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7:blocking-freedom&catid=43:shwe-gas-bulletin&Itemid=55; Human Rights Foundation of Monland-Burma, LAID WASTE: HUMAN RIGHTS ALONG THE KANBAUK TO MYAING KALAY GAS PIPELINE (2009년 5월) 다음에서 열람: <http://www.rehmonnya.org/data/Laid-Waste.pdf>; The Shwe Gas Movement, CORRIDOR OF POWER: CHINA'S TRANS-BURMA OIL AND GAS PIPELINES, 30 (2009년 9월) 다음에서 열람: www.shwe.org/Attachments/CorridorofPower.pdf.

38 *Filartiga v. Pena-Irala*, 630 F.2d 876, 885 (2d Cir. 1980) 참조; 다음도 참조 Winston P. Nagan & Lucie Atkins, *The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From Universal Proscription to Effectiv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Harvard Human Rights L.J. (2001) 다음에서 열람: <http://www.law.harvard.edu/students/orgs/hrj/iss14/nagan.shtml>.

39 예, Restatement 3d of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S. § 702 (1987).

40 Burma Penal Code, Ch. XVI, § 330 (고문은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임을 명시). 버마 변호인협회가 영어번역본 제공, 다음에서 열람: <http://www.blc-burma.org/html/Myanmar%20Penal%20Code/mpc.html>.

41 버마 형사법규, Ch. V, § 61 (영장없는 체포는 24시간내 판사앞에 출두해야함을 명시). 변호인협회가 영어번역본 제공 다음에서 열람:

EarthRights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버마-중국 수송관과 관련하여 다수의 강제 구금과 고문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Arakan 주의 Sittwe시에서는 정부기관이 학생들과 기타 가스 프로젝트 반대가 의심되는 이들을 체포, 심문하였습니다.⁴² 이외에도, Maday 섬에서는 가족의 땅을 몰수한 것을 반대하는 말을 마음에서 큰소리로 외친 한 청년이 세 차례에 걸쳐 체포되었습니다.⁴³ 2009 년도에는 한 Arakan 남성이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지역사회 모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정부기관으로부터 고문하고 구금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EarthRights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군대 정보원]이 나흘 동안 나의 눈을 가렸습니다. 나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4일간 설 새 없이 구타당하고 취조당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취조했습니다. 나를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들어와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가격했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때렸습니다. 어떤 때는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러면 정보원이 5분간 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나를 깨우고 취조하고 또 때리기 시작했습니다.”⁴⁴

이 남성은 날조된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변론할 변호사도 없었고 Insein 감옥에서 6개월 징역에 처해진 뒤 도주했습니다.

토지 몰수와 충분한 보상에 대한 권리

버마-중국 수송관의 두 프로젝트 모두는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고 버마 국내법 역시 위반할 여지가 있는 광범위한 남용 및 토지 몰수를 가져왔습니다. 버마 국내법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토지는 보호를 받아

http://www.blc-burma.org/html/Criminal%20Procedure%20Code/cpc_01-15.html#061.

42 인터뷰 #032-2008 버마 Sittwe에서; Shwe Gas Movement 인터뷰는 Shwe Gas Movement가 소장.

43 인터뷰 #051-2010 버마 Kyaukpyu에서.

44 인터뷰 #053-2010 버마 Sittwe에서.

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

EarthRights International
2011년 3월

“No relocation shall take place without th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the indigenous peoples concerned and after agreement on just and fair compensation and, where possible, with the option of return.”

-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정당한 보상 없이 정부기관이 몰수할 수 없습니다.⁴⁵ 또한 국내실향민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인 국내실향민 지침(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에 따르면 “충실하고 합리적인 공공의 이해 없이 진행되는 개발공사에 의한” 강제이동을 포함한 실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⁴⁶ 이 지침서는 또한 “정부는 선주민과... 기타 토지에 특별히 의존하고 있는 주민이 강제로 이동 당하는 것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버마는 또한 유엔의 선주민 권리에 대한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함으로써 소수민족 선주민에 대해 토지몰수 보호가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⁴⁷ 이 선언에 따르면 “관련 선주민의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사전동의, 정당한 보상에 대한 합의, 그리고 가능한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선택권을 수반하지 않는 이주는 있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hwe 수송관의 예상 경로와 인근지역에 Arakan과 Shan의 선주민 지역사회가 있음을 고려할 때 버마당국과 수송관 기업들은 이들의 이주와 재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공사를 진행시키기 전에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⁴⁸ 선주민의 권리는 아래에 더 상세히 설명됩니다.

버마의 국내법과 국제법규상 보호되는 권리에 불구하고 Shwe 공사는 이미 여러 차례의 충분한 보상 없는 토지몰수로 이어졌습니다. Maday

섬에서는 천연가스 저장시설 공사를 위해 56개에 달하는 지역주민이 약 60 에이커의 농지를 잃었습니다.⁴⁹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이들 주민은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섬 주민은 또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홍수 때문에 농경지가 영구적으로 파손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⁵⁰ Kyaukpyu에서는 20여 명의 주민이 수송관 경로에 놓여 있는 토지를 몰수당한 채 정부로부터의 보상을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⁵¹ Magway 지역구의 주민 일부 역시 자신들의 토지에서 수송관 관련 공사가 이미 시작됐음에도 보상 절차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은 부분적 보상만을 받았으며 그 외의 주민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⁵²

EarthRights는 최근 MOGE가 2010년 3월 16일자로 Arakan 주 주민에게 발송한 편지를 입수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주민은 단 5일 만에 토지를 비워야 했습니다.⁵³ 이 편지는 Shwe 가스 수송관 공사와 관련한 대우 인터내셔널과의 계약을 인용하면서 주민이 토지를 비워야 하고 남아 있는 곡물도 다 버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보상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버마 정부는 또한 지역사회 주민에게 토지 보상절차를 설명한바 역시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패와 부당이득이 늘어나고 주민은 자신들의 토지나 보상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지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Shwe 기업으로부터 토지의 예상 몰수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통지를 받았다고 밝히는 가운데,⁵⁴ EarthRights가 입수한 CNPC의 비밀 평가서에 따르면 공사의 30년 기간으로 인해 “주민의 강제이동은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⁵⁵ 일부 주민은 인맥이 좋은 사람들은 토지를 차지하거나 보상 지급금 절차 전에 명의를 바꾸어 보상 받을 실제

45 다음 참조, 예, The Land Acquisition Act (1894), The Requisitioning Act (1947) 인용, Scott Leckie & Ezekiel Simperingham, HOUSING, LAND AND PROPERTY RIGHTS IN BURMA: THE CURRENT LEGAL FRAMEWORK, 30-32, 43, 190-209, 502-505 (2009). 버마 법은 “분명하지 않고 혼란”스러우나 군사정부의 주거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계속되어와” 버마의 법적 규정과 법에 의한 통치의 상태를 잘 말해준다” 동일 16.

46 Francis Deng & et al.,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presented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Principle 6, (1998년 8월 2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reliefweb.int/ocha_ol/pub/idp_gp/idp.html.

47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t. 32, 다음에서 열람: www.un.org/esa/socdev/unpfi/en/drip.html.

48 Bonney Hartley, *MDG Reports and Indigenous Peoples: A Desk Review*, at 10 (2008년 2월), 다음에서 열람: http://www.un.org/esa/socdev/unpfi/documents/MDG_Reports_and_IPs_2008.pdf (Arakanese와 Shan 및 버마의 여러 다른 소수민족들은 선주민임을 명시).

49 인터뷰 #001-2011, 버마 Kyaukpyu 에서.

50 인터뷰 #004-2011, #005-2011, 버마 Kyaukpyu에서.

51 인터뷰 #005-2011, 버마 Kyaukpyu에서.

52 필드 보고서, 2011년 2월, 버마 Magway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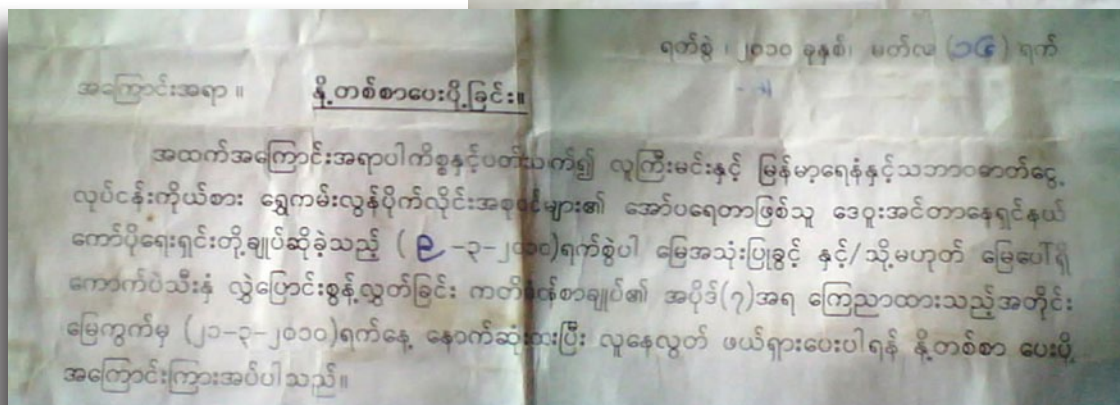
53 미얀마 가스 석유 공사가 주민들에 보낸 편지, 날짜 2010년 3월 16일.

54 예, 인터뷰 #070-2010, #071-2010 버마 Kyaukpyu에서.

55 EarthRights International이 2010년 입수한 비밀 평가서.

*Letter from MOGE to
villagers in Arakan State*

- Original Burmese -



- English Translation -

To: [Redacted]
Id No. [Redacted]
[Redacted] Village

2010 March 16

2010 M

Subject: Sending Notification Letter

Related
Internat
resentat
Internat
grows o
one sho

Related to the above-mentioned issue, the contract between you and Daewoo International, the offshore pipeline consortium operator, who is the MOGE representative, made on March 9, 2010; Section 7 of the agreement allows [Daewoo International] to use the land and/or you must delivery your land and whatever grows on the land. The deadline is March 21, 2010, and on March 21, 2010, no one should remain on that land and this letter is notice.

U Myint Shwe
Representative of MOGE
Acting Engineer
MOGE
Energy Department

Cc:
V.S.P.D (Villag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Township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Kyakpyu Township)
District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Kyakpyu District)

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

EarthRights International
2011년 3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⁵⁶ 이 밖에도 한 주민은 EarthRights에게 어느 토지가 몰수될지 사전에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그 토지를 사들여 더 높은 가격으로 정부기관에 되팔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⁵⁷ 나아가 EarthRights가 인터뷰한 주민 가운데 보상을 받은 이들 역시 4개월 내에 보상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⁵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은 아니었습니다. 주민은 받은 보상이 몰수당한 토지의 면적 계산이 잘못되거나 토지 개량에 들어간 액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의 실제 가치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⁵⁹ 이외에도, 대우 인터내셔널과 버마 하도급업체인 Asia World Corporation이 Arakan 주 Maday 섬에서 예전에 진행한 육지 탐사작업 때문에 곡물 피해와 수확량의 감소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보상 또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⁶⁰ 보상액을 받은 농경민들은 인접지역의 농지가

있습니다.⁶¹ 이들은 평생 이곳에서 살아왔으며 마땅히 이주할 만한 곳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⁶²

Maday 섬에서 자신들의 토지를 정부에 팔도록 강요당한 지역주민은 EarthRights에게 섬 인구 전체가 떠나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주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민은 중국 기업들이 “섬 전체를 몰수할 것”⁶³ 이라 말했고 다른 주민은 이 회사들이 공사지역에서 더는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가족들이 섬을 떠나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가족 농장을 강제로 팔아야만 했던 한 농민은 “여기서 더는 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집 터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섬은 매우 위험한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에 가스를 저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와 가스 수송관을 건설해 우리 마을을 파괴시킬 것입니다.”⁶⁴ 다른 지역주민은 회사와 정부기관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해 조직적으로 주민을 섬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⁶⁵

생활의 터전에 대한 영향과 여성과 아동의 권리

수송관 공사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인 토지를 부당하게 잃어버림에 따라 이러한 토지몰수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과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아래 보호되는 권리에도 저촉됩니다. 버마는 이 협약들을 비준했습니다. CRC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신앙적, 윤리적, 사회적 개발, 특히 영양, 의복, 주택에 관해 충분한 표준적 아동의 삶의 질을 가족들에게 제공하도록 국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⁶⁶ CEDAW는 각국 정부가



PHOTO: Construction materials on uncompensated land in Magway Division, Burma (Dec. 2010)

대부분 사라지고 경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새로운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56 인터뷰 #069-2010, #073-2010, #003-2011, 006-2011 버마 Kyaukpyu에서 .

57 인터뷰 #071-2010 버마 Kyaukpyu에서.

58 예, 인터뷰 #024-2010, #025-2010, #27-2010 버마 Kyaukpyu에서 ; 인터뷰 #021-2010 방글라데시-버마 국경에서.

59 예, 인터뷰 #050-2010, #069-2010, #074-2010 버마 Kyaukpyu에서.

60 인터뷰 #004-2010, #005-2010, #007-2010, #028-2010 버마 Kyaukpyu에서.

61 예, 인터뷰 #050-2010, #072-2010 버마 Kyaukpyu에서.

62 예, 인터뷰 #005-2010 버마 Kyaukpyu에서, (“제 사는 마을을 깊이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났고 나의 부모 조부모들이 이 마을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007-2010 버마 Kyaukpyu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조부모, 부모, 많은 친척들이 여기에서 태어나고 돌아가셨습니다.”)

63 인터뷰 #049-2010 버마 Kyaukpyu에서.

64 인터뷰 #047-2010 버마 Kyaukpyu에서.

65 인터뷰 #52-2010 버마 Kyaukpyu에서.

6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 27, 다음에서 열람: <http://www2.ohchr.org/>

“농촌지역 여성들의 문제를 특별히 고려”하고 농촌여성들이 “충분한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⁶⁷ 최저생활을 지탱할 대안이 없는 한, 수송관 공사는 이러한 권리와 보호를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EarthRights가 실행한 많은 인터뷰에서 지역주민은 농사 외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몰수로 인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⁶⁸ 한 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저는 늙은이입니다. Shwe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제 딸들도 그 회사에서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여성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 전했습니다.⁶⁹ 한 농민은 또, “가족을 먹여 살릴 충분한 쌀이 없습니다. 가족이 걱정됩니다. 4명의 자식이 있는데 3명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딸은 가족을 도와야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⁷⁰ 고 증언했습니다. 인터뷰한 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Shwe 기업들이나 버마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

버마 정부의 강제노동 사용은 이를 금하는 국제법 및 버마 국내법에도 불구하고 매우 광범위하며 상세히 기록되어 왔습니다.⁷¹ 버마는 강제 혹은 강요된 노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을 비준했으며 이에 따르면 “관할권이 있는 정부기관은 개인, 기업, 또는 사적 단체의 혜택을 위해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을 시행하거나 허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⁷² 또한, 버마 법 부칙 제1/99호(Supplementing Order No. 1/99)에 따르면 “책임있는 자는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⁷³ 부칙 제 1/99호는 강제노동을 형사처벌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⁷⁴

이러한 금지조항에도, 버마 군대는 Shwe 공사와 관련하여 강제노동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EarthRights는 Madaya 섬의 Shwe 공사지역 군인들이 지역주민로 소방대와 민병대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⁷⁵ 한 주민은 “한 가정당 한 명의 남성이 민병대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훈련에 가면 가족들을 위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지만 참가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⁷⁶

Kachin 독립군(KIA)의 한 고위대표자는 버마 육군이 Shan 주에 있는 KIA의 제4여단 지역의 지역주민을 징집하고 이 지역 민병대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버마인들이 내가 사는 마을에서만 Kachin족 40명, Shan족 20명, 중국인 10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 . 이 지역 [북부 Shan 주를 관통하는 수송관 지역] 전체에서 주민을 군인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수천명을 민병대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버마 육군]은 무기와 탄약을 배포할 것입니다.⁷⁷

끝으로 EarthRights는 2009년 버마 육군이 중부 버마의 건조 지구에서 대우 인터내셔널의 사회적 기업책임(CSR)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실행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버마

“It will be very dangerous on this island. They will store the gas here. And they will destroy our village by building the roads for the gas pipeline.”

- Arakan villager forced to sell his farm, 2010, Kyaukpyu

english/law/crc.htm.

67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rt. 14, *다음에서 열람*: <http://www2.ohchr.org/english/law/cedaw.htm>.

68 예, 인터뷰 #021-2010 on the Bangladesh-Burma border; 인터뷰 #027-2010 in Kyaukpyu, Burma; 인터뷰 #079-2010 in Yenangaung, Burma.

69 인터뷰 #074-2010 버마 Kyaukpyu에서.

70 인터뷰 #072-2010 버마 Kyaukpyu에서.

71 예, EarthRights International, SUPPLEMENTAL REPORT: FORCED LABOR ALONG THE YADANA AND YETAGUN PIPELINES (2002년 2월) *다음에서 열람*: www.earthrights.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supp-to-more-of-the-same.pdf; *Complaint concerning the non-observance by Myanmar of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다음에서 열람*: <http://www.ilo.org/public/libdoc/ilo/P/09604/09604%281998-81-serie-B-special-suppl%29.pdf>.

72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LO No. 29), art. 4, *다음에서 열람*: <http://www2.ohchr.org/english/law/forcedlabour.htm>.

73 The Union of Myanmar, The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Letter No. 04/Na Ya Ka (U)/Ma Nya, 2000년 11월 1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mol.gov.mm/8.Home/Home_link/spdc\(Eng\).pdf](http://www.mol.gov.mm/8.Home/Home_link/spdc(Eng).pdf).

74 동일.

75 인터뷰 #049-2010 버마 Kyaukpyu에서.

76 동일.

77 인터뷰 #080-2010 태국 방콕에서.

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

EarthRights International
2011년 3월

“They control everything. I feel that we lost our freedom.”

- Arakan villager, Kyaukpyu, Burma, 2010

“They ordered our 25 farmers from this village to sign that we were in agreement with them. . . . At last, I had to sell to them.”

- Arakan villager, Kyaukpyu, Burma, 2010

육군은 지역 주민을 강제적 동원하여 대우의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의 일부분인 의료원 시설 건설에 투입하였습니다. 주민은 강제로 동원되었고 공사에 관해 의견을 표할 수 없었습니다.⁷⁸ EarthRights는 제3자를 통해 대우가 이후 강제노동 사실을 통지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⁷⁹ EarthRights는 또한 동원된 주민이 후에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불만청구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⁸⁰

기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

Shwe 공사와 관련하여 Maday 섬에서 발생한 군사력 증가는 주민의 활동 제한, 개인 재산의 몰수, 그리고 주민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Maday 섬의 해군부대가 주민의 여행과 전통적 어업 구역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⁸¹ 주민은 또한 군인들이 물고기나 가축 등을 돈을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압수하였다고 말했습니다.⁸² 해군은 또한 어민들이 바다로 배를 출조할 때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⁸³ 한 주민은 “어업은 우리의 전통 삶의 방식입니다. 해군에게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마구 때리고 Kyaukpyu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⁸⁴ 또 다른 이는 “군대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합니다. 이젠 더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⁸⁵

또한 석유기업이 진출한 이후로 Kyaukpyu에 성 접대 여성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전통적 기준에 어긋나는 반 윤리적인 일이며 석유기업 직원들로 인해 이러한 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⁸⁶ “

이들은 우리 마을을 차츰차츰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한 농민은 석유기업이 성 접대 여성들의 유입에 책임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⁸⁷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사전동의 및 선주민 지역사회

버마에는 100개 이상의 선주민 종족이 공존하며 대부분 독특한 언어와 방언을 사용합니다. 수송관 공사는 Arakan와 Shan 인들을 포함하여 다수 선주민 종족이 사는 지역을 관통하거나 인접해 있습니다. 다수의 EarthRights 인터뷰에 따르면 Arakan 선주민은 자신들의 거주지와 집을 떠나는 것을 포함해 공사의 어떤 면도 거부하거나 반대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기업들과 버마정부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만 합니다.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들은 매우 강합니다.”⁸⁸

주민은 이들의 토지가 수송관 공사 때문에 몰수될 것이라 통지받았고 이를 거절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토지몰수에 대한 보상금을 언제 받을지 통지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Maday 섬에서 Asia World사의 대표자들은 회의를 열어 주민에게 이들의 토지가 압수될 것이며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 말했으나, 추가설명이나 실질적인 지급 없이 섬을 떠났습니다.⁸⁹ 유사한 회의가 Kyaukpyu와 Magway에서도 열렸습니다.⁹⁰ 한 주민은 “마을에서 주민 25명에게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 . . 마지막에는 땅을 그들에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⁹¹

비자발적인 재정착이 Kyaukpyu와 Arakan 주의 Maday 섬(Rakhine)에서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은 Kyaukpyu 항만공사가 300가정을 강제이동시킬 것이며 Maday에서 30-40 채의 집이 철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하고

78 필드 보고서, 2009년 5월.

79 동일.

80 동일.; EarthRights의 ILO와의 편지, 2009-2010.

81 인터뷰 #009-2010, 011-2010, #013-2010, #054-2010 버마 Kyaukpyu에서.

82 인터뷰 #014-2009버마 Kyaukpyu에서(2009).

83 예, 인터뷰 #048-2010, #049-2010 버마 Kyaukpyu에서 (2010).

84 인터뷰 #054-2010 방글라데시-버마 국경에서.

85 인터뷰 #051-2010 버마 Kyaukpyu에서.

86 예, 인터뷰 #018버마 Kyaukpyu에서; 다음도 참조 EarthRights International, Broken Ethics: The Norwegian Government's Investments in Oil and Gas Companies

Operating in Burma (Myanmar), 28 (2010년 12월), 다음에서 열람: <http://www.earthrights.org/publication/broken-ethics>.

87 인터뷰 #015-2010 버마 Kyaukpyu에서.

88 인터뷰 #004-2010버마 Kyaukpyu에서(2010).

89 인터뷰 #007-2010, #009-2010, #024-2010, #025-2010, #026-2010, #047-2010 버마 Kyaukpyu에서.

90 인터뷰 #071-2010버마 Kyaukpyu에서; 인터뷰 #078-2010 버마 Magway에서.

91 인터뷰 #047-2010버마 Kyaukpyu에서.

있되, 아직 공식발표는 없습니다.⁹² 공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Shan 주의 노선을 따라 추가의 재정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되듯, 일부 지역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평가작업이 이루어졌지만 Maday 섬과 기타 지역에 대한 평가는 금지되었고,⁹³ 평가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물수와 강제 퇴거를 포함한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어떠한 완화조치를 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EarthRights International이 아는 한 관련기업들은 아직 지역사회와 유의미한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재정착을 포함해 공사와 관련한 결정에서 지역사회에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사전동의(FPIC)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arthRights는 익명의 소스로부터 CNPC가 가스 수송관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SIA)를 시행했음을 확인했습니다.⁹⁴ SIA는 서부 버마에서 공사가 이미 시작된 후에 이루어졌으며 회사의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에 앞서 수송관 노선에 있는 지역 마을의 12곳을 무작위로 뽑아 요구분석(needs assessment)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⁹⁵ CNPC는 조사팀이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사전동의를 해당 마을에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버마정부도 역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⁹⁶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사전동의와 유의미한 협의의 원칙(Principle of Meaningful Consultation)은 국제금융기관들의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과 세계은행 규칙, 그리고 다자간 산업 기준(multi-party industry standards)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⁹⁷ 토지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공사 단계마다 선주민이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진적으로 확장 추세에 있는 국제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⁹⁸ 이러한 기준은 특히 지역사회가 희망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가 선택한 대표 기관으로부터의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사전동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⁹⁹ 이와 같은 동의는 자원추출 관련 프로젝트에서 더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버마정부가 수송관 기업들로 하여금 지역 선주민과 유의미한 협의를 진행하고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선주민 권리에 대한 선언 아래 정부의 의무에 반하며, 버마가 비준한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 금지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¹⁰⁰

버마 선주민의 권리 존중에의 책임은 버마 정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 인권 및 기업에 대한 사무총장의 특별대표(U.N.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Human Rights and Business) John Ruggie 교수가 지적한 바 있듯이 투자기업의 모국(home state) 정부는 수출촉진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들이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과정을 확실히 거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¹⁰¹ 실제로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기업

년 5월), 다음에서 열람: www.foleyhoag.com/NewsCenter/Publications/eBooks/Implementing_Informed_Consent_Policy.aspx?ref=1.

98 세계 은행, 작업 지침서, *OP 4.10 - Indigenous Peoples*, 다음에서 열람: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PROJECTS/EXTPOLICIES/EXTOPMANUAL/0,,contentMDK:20553653~menuPK:64701637~pagePK:64709096~piPK:64709108~theSitePK:502184,00.html#F3>;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t. 32, 다음에서 열람: www.un.org/esa/socdev/unpfi/en/drip.html.

99 동일.

100 다음 참조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23: Indigenous Peoples* ¶ 4(d), 다음에서 열람: <http://www.unhcr.ch/tbs/doc.nsf/0/73984290dfea022b802565160056fe1c?OpenDocument>.

101 John Ruggie,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 39, 다음에서 열람: <http://daccess-ods.un.org/access.nsf/Get?Open&DS=A/HRC/8/5&Lang=E>.

92 인터뷰 #004-2010, #007-2010, #008-2010, #009-2010, #014-2011버마 Kyaukpyu에서.

93 인터뷰, 2010년 1월 4일.

94 다음 참조 영향평가와 주의 절차, 아래에 15.

95 동일.

96 EarthRights 인터뷰, 2010년 1월 4일; Confidential assessment document obtained by EarthRights, 2010.

97 다음 참조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Performance Standards on Social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19-20, 29-31, 2006년 4월 30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ifc.org/ifcext/sustainability.nsf/AttachmentsByTitle/pol_PerformanceStandards2006_full/\\$FILE/IFC+Performance+Standards.pdf](http://www.ifc.org/ifcext/sustainability.nsf/AttachmentsByTitle/pol_PerformanceStandards2006_full/$FILE/IFC+Performance+Standards.pdf); Amy K. Lehr & Gare A. Smith, IMPLEMENTING A CORPORAT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POLICY: BENEFITS AND CHALLENGES, 11-22 (2010)

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

EarthRights International
2011년 3월

모국들은 선주민의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사전동의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절차를 확립하지 않은 채 컨소시엄 기업들에 대한 투자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버마의 잠재적 인종차별 금지협약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운영의 사회적 허가 (Social License to Operate)

“가스가 지하에 묻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가스를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 버마의 Arakan주의
소수인종 Arakan
거주민¹⁰²

사업운영의 사회적 허가는 “기업의 설립이나 활동국 아래서의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존재하며 “기업과 이해당사자들의 기대를 정의하는 사회적 관습규범”에서 비롯됩니다.¹⁰³ John Ruggie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허가는 기업의 인권준중에 대한 의무의 일부분입니다: “정부는 법적 준수의 범위를 책정한다. 그러나 더 넓은 범위에서 기업의 인권준중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 기대에 의해 정의되며 또한 기업 사업운영의 사회적 허가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이기도 하다.”¹⁰⁴

사업운영을 위한 사회적 허가의 요소들이 표준화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과 관련 소유주들은 이를 회사들이 장애물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그리고 책임성 있는 회사활동의 측정계로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프로젝트 이해당사자들 역시 공사의 위험성과 혜택을 평가할 때 사회적 허가 여부를 참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arthRights는 버마-중국 수송관에 관련된 회사들이 사업운영의 사회적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영향받은

지역사회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현재 버마-중국 수송관 공사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여론은 매우 큼니다. 지역사회는 공사가 지역 환경 파괴 없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¹⁰⁵ “회사의 그 많은 직원이 우리 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만을 알 뿐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나 농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가스를 구매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스를 사용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에서 사용하고 싶습니다”¹⁰⁶ 라고 한 농민은 말합니다. 다른 농민은 또 “외국 회사에 가스를 파는 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을 할 권리조차 없습니다”¹⁰⁷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나는 가스를 외국 회사에 파는 것에 반대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조차 우리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마 정부는 너무나 권력이 강합니다”¹⁰⁸ 고 전했습니다.

V. 구제제도에의 접근성

법치와 독립적인 사법권은 버마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권의 정적을 침묵시키고 처벌하는데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¹⁰⁹ 따라서 Shwe 공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토지나 곡물 피해로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 그리고 안전요원들에 의해 구타당하거나 자신들의 전통적 어업 구역 사용이 금지된 이들은 버마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불평할 곳이 없습니다. 버마 서부의 한 주민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난한 농부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하고 부유합니다. 그들은 우리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할 때 우리는 그저 따라야 할 뿐입니다.”¹¹⁰ 많은 다른 주민도 같은

102 필드 보고서, 2005년 8월, 버마 Arakan 주.

103 Larry Cata Backer,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Social License to Operate*, Law At the End of the Day (블로그), 2010년 6월 8일, 다음에서 열람: <http://lbackerblog.blogspot.com/2010/06/corporate-governance-and-social-license.html> (last visited March 4, 2011).

104 SRS John Ruggie의 발언, 분쟁 예방 및 해소 국제기관, 기업 리더십 수상 기념식, 뉴욕2, 2008년 10월 다음에서 열람: <http://198.170.85.29/Ruggie-speech-to-CPR-2-Oct-2008.pdf>. (마지막 방문 2011년 3월 4일).

105 EarthRights 인터뷰와 필드 보고서 (2005-2011).

106 인터뷰 #008-2010 버마 Kyaukpyu에서.

107 인터뷰 #012-2010 버마 Kyaukpyu에서.

108 인터뷰 #020-2010 방글라데시-버마 국경에서.

109 다음 참조 Scott Leckie & Ezekiel Simperingham, *상기* 주 45에 9.

110 인터뷰 #010-2010 버마 Kyaukpyu에서.

뜻을 EarthRights에게 전했습니다.¹¹¹

현재 ILO의 강제노동 진정기제 (complaint mechanism)는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 비사법적 수정조치만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버마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진정기제의 활용과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버마-중국 수송관 공사를 하는 회사들은 공사지역에서 진정기제를 홍보하고 ILO의 버마 활동을 홍보하며 ILO에 접수된 강제노동 진정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버마 당국에 자신들의 영향을 행사하여 진정 제기자들이 버마 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 받는 것을 막도록 힘씀으로써 노동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ILO는 민간분야의 대표자들을 포함해 버마의 여러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촉진”(facilitation) 훈련을 시작했으며 이 훈련에서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이 강제노동을 ILO에 접수하는 것을 촉진하는 법을 배웁니다.

EarthRights는 버마에서 활용 가능한 기제가 제한적임을 인지하며 2008년경에 파트너와 함께 경제 협력 및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한국 연락소 (National Contact Point, NCP)에 대우 인터내셔널과 KOGAS를 상대로 Shwe 가스 프로젝트와 관련한 특정 사례 불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진정서는 상기 두 기업이 Shwe 공사에서의 인권유린과 부정적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최소한 6건의 OECD 지침을 위반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¹¹² 한국 NCP는 그러나 대우 인터내셔널과 KOGAS의 편을 들어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¹¹³

EarthRights는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한국, 중국, 인도의 국내법의 국외적용 관련 법규 등의 연구를 포함, Shwe 수송관 기업들이 인권 침해에 공모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버마-중국 컨소시엄 지역의 경우처럼 국정관리(governance)가 불분명한 분쟁이 지속돼 구제체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Ruggie 교수는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독립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¹¹⁴ 이러한 “독립적 책임”은, 파이프 공사가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인권 유린의 정도와 심각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PHOTO: Pipeline construction near Irrawaddy River, Magway Division (Feb. 2011)

VI. 영향평가와 주의 절차

대규모 천연자원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평가(EIA/SIA)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또한 진행된다면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가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환경, 사회적 고려사항을 제공해줍니다. 국제 모범경영 기준에 의해 시행될 때 영향평가는 프로젝트 공사 이전, 도중, 그리고 이후 단계를 통틀어 운영회사들과 부정적 영향을

111 다음 참조 예 인터뷰 #004-2010, #005-2010, #010-2010 버마 Kyaukpyu에서.

112 EARTHRIGHTS INTERNATIONAL ET. AL, REPORT TO THE SOUTH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REGARDING DAEWOO INTERNATIONAL AND KOREA GAS CORPORATION (Oct. 2009) 다음에서 열람: www.earthrights.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OECD-Complaint10.29-ENGLISH.pdf.

113 EARTHRIGHTS INTERNATIONAL AND THE SHWE GAS MOVEMENT, A GOVERNANCE GAP: THE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HOLD KOREAN CORPORATIONS ACCOUNTABLE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VIOLATIONS IN BURMA, 13 (2009년 6월) 다음에서 열람: www.earthrights.org/publicatons.

114 John Ruggie, Draft Guiding Princip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19-20 (2011년 11월) 다음에서 열람: <http://www.reports-and-materials.org/Ruggie-UN-draft-Guiding-Principles-22-Nov-2010.pdf>.

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

EarthRights International
2011년 3월

받을지 모르는 지역사회 간의 대화를 포함합니다. 정부 통치가 불분명하고 억압적인 지역에서는 이러한 영향평가서는 종종 지역사회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개발공사 결정에 대해 유의미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버마는 환경 영향평가에 관련해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버마는 생명의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비준하였고 이 협약은 생명의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적절한 절차의 소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¹¹⁵ 버마는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에 관한 협정도 승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 정부들은 공사제안서가 도입되기 전에 “천연환경을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¹¹⁶ 버마는 또한 유엔의 1982년 해양법 협약 제206조를 비준하였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 정부가 해당 사법지역이나 통제하는 지역에서 해양환경에 공해나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¹¹⁷

이러한 버마의 국제법 의무를 더해, 영향평가는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보편적 관행입니다. 이는 기업 책임성에서 최소의 요소입니다. OECD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회원국가의 기업에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대우 인터내셔널, KOGAS, POSCO 역시 이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¹¹⁸

115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협정, art. 14, (1992년 6월) 다음에서 열람: <http://www.cbd.int/convention/text/>.

116 ASEAN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Art. 14, 다음에서 열람: <http://www.aseansec.org/1490.htm>.

117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Final Act, 1982년 12월 21일, art. 206, 다음에서 열람: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833/volume-1833-A-31363-English.pdf>.

118 OECD 다국적 기업 지침서의 섹션V.3는 OECD 회원국가이나 여기에 소재한 회사들은 “제한된 공사가 심각한 환경, 보건, 안전성 영향이 있고 적법 정부기관의 결정대상이 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00년 6월), 다음에서 열람: <http://www.oecd.org/dataoecd/56/36/1922428.pdf>.

중국, 한국, 인도의 국내법에 따르면 이들 국가 내에서 심각한 영향을 끼칠 공사에 착수하는 기업은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¹¹⁹ 그러나 외국에서의 공사에 대한 이들 법규의 적용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9년에 중국 환경보호성(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EP)과 상무성(Ministry of Commerce)은 중국 외국 직접 투자 환경 보호 지침서(Chinese Overseas Direct Investment Environment Protection Guidelines)의 초안을 작성했으나 여전히 관련 정부기관들로부터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¹²⁰ 이 초안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이 EIA를 시행하고 투자 대상 국가보다 중국 환경 기준이 더 높을 때 이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상 국가가 체결한 국제 환경 협약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¹²¹ 관련 부처 간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이 지침서의 최종안은 언제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서부 버마에서의 가스 탐사와 생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다고 밝혔으나 이 문서를 공개하거나 지역사회에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2008년 EarthRights와의 회의에서 대우는 EarthRights와 쉘가스운동(Shwe Gas Movement)과 한국 국제민주연대(KHIS),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관련문서를 국제 기준에 따라 공공에 발표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¹²² OECD 지침서를 위해 한국 NCP에 제출한 특정사례 요청에 대한 응답에서, 대우는 NCP에게 OECD 지침서가 요구하는 대로 EIA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NCP는 이어 대우가 관련 문서를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대우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¹²³

119 Annie Donnelly, et al., A DIRECTORY OF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73, 74-75, 82, Int'l Inst. for Environ. & Development (1998).

120 Ding Qingfen, *Green norms for overseas investment soon*, CHINA DAILY, 2010년 6월 9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chinadaily.com.cn/cndy/2010-07/09/content_10084524.htm.

121 동일.

122 EarthRights와 대우와의 회의, 주, 2008년 10월 28일, 한국 서울.

123 EARTHRIGHTS INTERNATIONAL & THE SHWE GAS MOVEMENT, A GOVERNANCE GAP: THE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HOLD KOREAN CORPORATIONS ACCOUNTABLE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VIOLATIONS IN BURMA, 2009년 6월 15



PHOTO: Project signage in Gonchun Village,
Kyaukpadaung Township, Arakan State (Feb. 2011)

EarthRights가 이후 대우가 Shwe 프로젝트를 위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를 입수하려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환경영향에 대한 어떠한 물리적 또는 지역 증언은 없었습니다. Arakan 주, Magway 지역구, 또는 Mandalay 지역구에서 EarthRights가 인터뷰한 어떠한 지역주민도 대우나 관련 기업들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교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한 주민 모두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작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¹²⁴

EarthRights는 다양한 소스와 비공개 문서를 통해 CNPC가 수송관 노선의 일부 지역에서 양적 사회영향평가(SIA)를 시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송관 노선을 따라서 12개 타운십의 3,600가정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대상 가정은 무작위로 선정되었고 각 타운십의 40 마을에서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¹²⁵ 이것은 긍정적이고 환영받을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에는 조사팀이 통제할 수 없는, 버마의 군부정권 체제에 기인한 방법론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에 포함될 모든 마을은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Madaya 섬을 비롯해 일부 마을에서는 조사를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EarthRights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몰수와 기타 남용이 벌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¹²⁶ 조사가 허용된 지역에서는 버마당국이 평가 도중 조사팀을 동행했으며 이에 따라 조사의 객관성, 응답률, 참가자의 안전보장 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평가가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절차에 가까운 소스에 따르면, 평가를 진행한 담당자들 역시 평가가 단 한 번뿐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¹²⁷

이 소스는 또한 공사가 이미 시작한 후에야 사회영향평가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평가의 일부분으로 작성되었으며 EarthRights가 입수한 한 문서에 따르면 “공사를 취소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없다”고 간단히 밝히고 있으나 공사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¹²⁸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 평가는 이해당사자들이 공사의 진행 여부 또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판정하게끔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게 아닌 듯합니다. 실제로 한 소스에 의하면 주민의 회사와 수송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기업들이 사회경제적 조건을 향상할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영향평가”는 엄밀히 말해 영향평가라기보다는 요구분석(needs

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

일, 13, 다음에서 열람: www.earthrights.org/publications.

124 EarthRights 인터뷰, 버마 Arakan 주에서, 2005-2011.

125 EarthRights 비밀 소스와 인터뷰.

126 동일; EarthRights 인터뷰, 2008-2011.

127 EarthRights 인터뷰, 2010년 1월 4일; EarthRights의 비밀소스와 연락.

128 EarthRights가 입수한 비밀 평가 문서, 2010..

assessment)이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바가 정부에 의해 무시되는 버마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은 물론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수송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평가로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arthRights가 입수한 문건들과 여러 소스와 의 논의에 따르면 상기한 영향평가들은 공사와 연관해 일어날 버마 군대의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수송관이 내전 또는 민족 간 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¹²⁹ 한 문서는 CNPC가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군대와 지역 군 지휘자들과 협력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¹³⁰

이외에도 EarthRights가 입수한 비공개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따르면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지역사회가 기업들을 환영하고 기업진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회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¹³¹ 그러나 이는 EarthRights가 입수한 정보와는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2005-2011년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에서 EarthRights는 공사를 찬성하는 지역주민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지역주민은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일부 경우에는 두려움 섞인 반대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주민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학대를 당한 경향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¹³²

비공개 영향평가의 한계에도 EarthRights가 입수한 문서와 정보에는 어느 정도 희망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한 측면은 CNPC가 부정적 환경 영향에 대해 지역사회에 알리며 지역주민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 영향에 대해 독립적 감사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¹³³ 이 문서는 CNPC가 버마에서 중립적 위치에 있을 수 없고 토지몰수와 강제노동 등 특별한 위험이 따르는 인권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CNPC가 강제노동 사실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알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버마-중국 수송관 프로젝트의 영향평가가 투명하지 못하고 공개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 잠재적 영향을 알린다는 영향평가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한 가지가 모자란 것입니다. 버마 내의 감독이 미미한 가운데 외부적인 압력을 받을 여지 또한 없다면 관련 기업들은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주의 절차(due diligence)와 관리체계를 확립할 동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VII. 민족 간 긴장상태의 심화: 분쟁지역에서의 기업활동

EarthRights의 소스에 따르면 수송관 경로는 북부 Shan주 내의 정치적 분쟁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경로는 Hsipaw에서 시작하여 Namtu, Maimaw, Maiwee, Namkhan까지 이어집니다.¹³⁴ 그리고 Kachin 독립군(Kachin Independence Army, KIA) 제 4 여단, Kachin 방위군(Kachin Defense Army), Shan 주 북부군(Shan State Army-North, SSA-N)이 조정하고 있는 지역을 관통합니다.¹³⁵ 2011년 초부터 SSA-N은 제3, 제 7 여단으로 구성되는 국경 방위군(Border Guard Force, BGF) 과와 제 1 여단으로 구성되는 비BGF 파로 나뉘어졌습니다.¹³⁶ BGF는 버마 정부가 버마군대의 직접 통제 아래 휴전 인종 무장 그룹을 “국경 방위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¹³⁷ SSA-N 제1 여단은 이 제안을 거절한 채 현재 연방국 확립을 위한 정치적 대화를 목표로 하며, 버마 군대와와 갈등 발생 시 상호지원을 합의한 소수민족 무장군 상부 단체 ‘연방국

134 TRANSNATIONAL INSTITUTE, NEITHER WAR NOR PEACE: THE FUTURE OF THE CEASE-FIRE AGREEMENTS IN BURMA (July 2009), 다음에서 열람: <http://www.tni.org/sites/www.tni.org/files/download/ceasefire.pdf>; EarthRights의 Ta'ang Youth Organization (TSYO)을 포함하여 Shan주의 소스로부터의 최신 업데이트.

135 동일.

136 Sai Zom Hseng, *Cease-fire Groups Wary as Burmese Army Buildup Continues*, THE IRRRAWADDY, 2011년 3월 2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irrawaddy.org/article.php?art_id=20862.

137 General Ye Myint 중장과 다른 버마육군 고위 장성들에게 버마군대의 통제아래 상기 휴전중인 소수인종 그룹들을 국경 방위군으로 전환시키라는 지시를 보여주는 비밀문서, 2009년 4월 28일.

129 EarthRights 인터뷰, 2010년 1월 4일; EarthRights가 입수한 비밀 평가 문서, 2010.

130 EarthRights가 입수한 비밀 평가 문서, 2010.

131 동일.

132 다음 참조 인권 침해 기록 및 관련 국제, 국내 법 기준: 업데이트 보고, 상기 6.

133 EarthRights가 입수한 비밀 평가 문서, 2010.

실현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the Emergence of a Federal Union)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¹³⁸ 이 위원회에는 Karen 전국연합 및 KIA의 정치기구인 Kachin 독립기구(KIO)를 포함한 다수 소수민족 무장군이 속해있습니다.¹³⁹

프로젝트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SSA-N과 버마군대, 그리고 소수인종 Kokang 무장그룹과 버마 군대 간에 무장투쟁이 벌어진 바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2009년에는 30,000명의 피난민이 중국으로 피난하기도 했습니다.¹⁴⁰ 더욱이 KIA는 현재 버마 군사정부로부터 공격을 예상하고 있고¹⁴¹ KIO를 포함한 여러 소수민족 무장그룹과의 휴전협정은 수십 년의 역사 끝에 파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증가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버마 군대가 Shan 주에서 수송관과 관련해 강제노동을 동원한 것 또한 이 지역의 민족 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KIA의 한 고위관계자는 EarthRights에게 북부 Shan 주의 수송관 지역 주민이 어떻게 무장투쟁 훈련을 받는지 전해주었습니다. “버마 군대는 이제 그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수송관 부근 있는 모든 민족을 훈련시키려 합니다...여기에서 전략은 Kachin인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KIA 활동이 없어지게 된 후에는 이들이 계속 그 지역을 방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¹⁴²

중국 당국은 KIA와 버마정권 사이의 대화에 관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은 양측이 대화를 지속하고 절제를 행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¹⁴³ 그러나 중국

당국이 KIA와 버마 정권에 투쟁을 하지 말도록 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KIA 관계자는 버마 군대가 지역 주민을 징집하고 군사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이미 버마정권이 유의미한 정치적 대화를 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중국인들이 이 점을 잘 압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말하면 우리는[군사정권이 KIA가 항복하라는 요구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 [강제 동원된 민병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¹⁴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지역에 수송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지금 대답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¹⁴⁵

Shan 주의 분쟁은 이처럼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오래 지속해왔고 수송관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공사가 시작될 때 그 영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실린 한 인터뷰에 따르면, KIA의 Gam Shawng Gunhtang 장군은, “수송관은 무장 그룹을 제거하기 위한 [버마 군부의] 마지막 수단이자 기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¹⁴⁶

이처럼 지속적인 분쟁의 역사와 수송관이 불안정과 폭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arthRights는,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Shan 주를 통과하는 수송관 공사를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기업들이 계속 공사진행을 원한다면, 이 지역에서 민족분쟁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협력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공사와 관련한 위험을 숙지하고 있으며, 정부 파트너와 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수한 위치를 이용하는 등 사업운영을 책임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VIII. 수익창출과 관리

“Shwe 가스 수송관을 통한
대중국 천연가스 판매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이

Economics.ashx.

144 동일.

145 동일.

146 Thomas Fuller, Ethnic Groups in Myanmar Want Peace but Gird for a Fight, New York Times, 2009년 5월 10일.

138 Saw Yan Naing, *Ethnic Alliance Vows to Strive for Federal Union*, THE IRRRAWADDY, 2011년 2월 21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irrawaddy.org/article.php?art_id=20792.

139 동일.

140 BROKEN ETHICS, 상기 주 86, 27.

141 Dennis Gray, *Myanmar's ethnic minorities prepare for war*, THE WASHINGTON POST, 2010년 11월 2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11/02/AR2010110201037.html>.

142 인터뷰 #080-2010, 태국 방콕에서.

143 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s Myanmar Strategy: Elections, Ethnic Politics, and Economics*, 2010년 9월 21일, 4-5., 다음에서 열람: <http://www.crisisgroup.org/~media/Files/asia/north-east-asia/B112%20Chinas%20Myanmar%20Strategy%20Elections%20Ethnic%20Politics%20and%20>

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

EarthRights International
2011년 3월

수익은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Tomás Ojea Quintana,
U.N.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¹⁴⁷

EarthRights International은 CNPC가 현재로서는 버마-중국 수송관과 연관이 없는 해안 탐사 블록과 관련해 MOGE 관리들에게 지급하기도 계약한 사이닝 보너스와 생산물 보너스 구조를 명시하는 기밀문서를 입수하였습니다. EarthRights의 판단에 따르면 이 계약서의 조항은 MOGE와 외국 석유회사들 간의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버마-중국 수송관의 단계에서는 MOGE에 대한 기업들의 생산 전(pre-production) 지급액은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¹⁴⁸ EarthRights가 입수한 문서에는 석유회사들이 MOGE 관리들에게 “사이닝 보너스”로 미화 1천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액수는 생산 전 단계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여타 금액들과 마찬가지로 경비지출에서 되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¹⁴⁹ 이 금액은 따라서 석유회사들이 버마 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버마 군부의 사이닝 보너스 지급액의 사용 또는 보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¹⁵⁰

EarthRights는 또한 CNPC가 MOGE에게 천연가스 생산량과 관련한 지급 구조를 명시하는 “생산물 보너스”의 내용도 입수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회사들이 “천연가스의 상용 발견을 위한 개발 계획의 승인 후” 미화 1백만 달러를 지급하고 90일 연속으로 일일 1.5억 큐빅 피트 생산량이 도달할 때 미화 2백만 달러를, 90일 연속 일일 3

억 큐빅 피트 생산량에 도달할 때 미화 3백만 달러, 90일 연속 일일 6억 큐빅 피트 생산량에 도달할 때 미화 4백만 달러를, 90일 연속 일일 7.5억 큐빅 피트 생산량에 도달할 때 미화 \$5백만 달러, 그리고 90일간 연속 일일 9억 큐빅 피트 생산 시 미화 1천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¹⁵¹

버마는 수익 투명성(revenue transparency)이 실행하지 않는 국가이며 자국 내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버마 정부는 최근 “특별 자금”법을 통과시켜 군대 총사령관이 (군인이 주를 이루는) 정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아무런 감독이나 책임절차 없이 특별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군대 총사령관이 해당 자금을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를 분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히 총사령관의 자금 사용에 대해 “어떤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도 질문, 설명,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¹⁵² 버마 민족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포함한 다수 단체는 최근 군부의 이러한 수익창출과 관리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¹⁵³

자원개발산업 수익과 계약의 투명성은 천연자원 수익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초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무적이고 자발적인 제안들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예를 들어 미국정부는 최근 거의 모든 국제 석유, 가스, 채광기업들이 연례적으로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현지 정부에 지급한 금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¹⁵⁴ 버마의 경우 Total, Chevron, 중국 해안 석유 공사(CNOOC) 등의 지급액이 이 법안의

147 Tomás Ojea Quintana, *Progres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16, A/HRC/16/59, 2011년 5월 7일.

148 EarthRights가 입수한 비밀 생산 공유 계약서, 2010.

149 동일. 31; 다음도 참조 Production Sharing Contract for Appraisal,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Petroleum in the Moattama Area Between 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and Total Myanmar Exploration and Production, \$9.4, <http://www.earthrights.org/sites/default/files/documents/1002.pdf>.

150 EarthRights는 이전에 버마정권의 버마 가스사업의 이득을 오용한 것을 밝혀냈음. 동일. 상기 주 2.

151 비밀 생산 공유 계약서, 상기 주 1, 31-33.

152 *Myanmar Democracy Group Slams Military Fund*, ASSOCIATED PRESS, 2011년 3월 4일, 다음에서 열람: http://news.yahoo.com/s/ap/20110304/ap_on_re_as/as_myanmar_opposition_1; *Politicians Decry Military Budget*, DEMOCRATIC VOICE OF BURMA, 2011년 3월 7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dvb.no/news/politicians-decry-military-budget/14619>.

153 동일.

154 다음 참조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1504, 다음에서 열람: <http://www.transparency-usa.org/documents/FinancialReformReconciliation.pdf>.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유럽연방¹⁵⁵과 한국¹⁵⁶ 등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홍콩 증권시장 또한 최근 상장된 기업과 상장 신청 중인 모든 기업에 대해 현지 정부에 지급한 금액의 투명성을 요구해 예컨대 세금, 로열티, 기타 주요 지급액을 개별 국가 단위로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¹⁵⁷

나아가 여러 국가의 정부와 석유, 가스 및 채광 기업들의 자발적 기획인 자원개발산업 투명성 확보 선언(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은 에너지와 채광 분야의 수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의 표준화 작업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¹⁵⁸ 다만 현재 버마에서는 이처럼 자발적으로 투명한 자원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arthRights는 버마의 에너지부 장관 Lun Thi의 측근 소스를 통해 장관이 EITI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을 전달받았습니다.¹⁵⁹ 더욱이 EITI “인증”은 수익 관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적인 시민 사회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시민사회가 버마에 존재하지 않음은 버마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서방 석유회사 임원들도 사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버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버마 비정부기구들 역시 안전에 대한 염려 없이는 버마의 가스로 창출되는 금액의 관리에 초점을 둘 수 없는 형편입니다.¹⁶⁰

버마의 이러한 수익 투명성 결여는 에너지 기업들의 책임성 있는 기업활동과 투명성 제고 노력을 더욱 절실하게 합니다. EarthRights와 파트너들의 대우가 버마에서 EITI를 실행하도록 사적으로 권장해 왔으나 대우 측은 현재 버마정부를 고려할 때 수익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¹⁶¹ 대우의 임채문 부사장은 투명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나는 미얀마 정부가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모든 수익을 미얀마 국민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¹⁶² 대우는 또한 생산물 분배 계약의 조건상 버마에서 투명성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EarthRights와의 회의에서 대우 임원들은 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¹⁶³

국제 에너지 기업들과 MOGE 간의 공개된 혹은 유출된 생산물 분배 계약서들로 미루어봤을 때, EarthRights는 대우 측이 주장하는 비밀보장 조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기업들이 충분히 지급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¹⁶⁴ CNPC와 Total의 MOGE와의 계약서에서 이에 해당하는 조항은 (두 기업 모두) 동일한 언어로 기업들이 MOGE로부터 구매하거나 취득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 철저한 비밀과 기밀을 유지할 것과 [버마] 내에서의 사업 도중 모든 기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¹⁶⁵ 요컨대 이 계약들은 기업이 MOGE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해석을 할 때에나 버마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수익 투명성을 실행하는 것에서 계약상 금지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9년도 Total 사는 2008년 한 해 동안 자사의 버마 프로젝트가 버마 정부에 미화

155 PWYP International, *New Transparency Laws Could Help Millions, says Publish What You Pay*, 언론 보도자료, 2011년 2월 20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publishwhatyoupay.org/en/resources/new-transparency-laws-could-help-millions-says-publish-what-you-pay>.

156 국외자원개발법 개정안 [Amendment to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Act] (2010년 12월에 발의); 다음 참조 http://www.newjinbo.org/xen/?document_srl=938133&mid=bd_news_comment (한국어).

157 Revenue Watch Institute, *Hong Kong: Stock Exchange to Require Greater Transparency*, 2010년 5월 28일, 다음에서 열람: <http://www.revenuwatch.org/news/news-article/china/hong-kong-stock-exchange-require-greater-transparency>.

158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www.eiti.org.

159 국제 금융기관의 비밀 소스로부터, 2011.

160 EarthRights의 랑군 소재 NGO 국장과의 이메일 및 전화 통신, 2010-2011. 버마에서 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NGO들은

다른 그룹들이 이득 투명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있는 것을 환영하지만 안전 문제때문에 자신들은 주의를 두지 않는다고 함.

161 Daewoo International 상임 임원과의 회의 기록, 2008년 10월 28일, 한국 서울.

162 동일.

163 동일.

164 다음 참조 EarthRights International, The Yadana Pipeline, 다음에서 열람: <http://www.earthrights.org/campaigns/yadana-pipeline> (Yadana 파이프라인 링크로 연결).

165 동일.; 비밀 생산 공유 계약서, 상기 주 1, 64.

버마-중국 수송관:
인권 위반, 관련 법규,
수익 불투명성

EarthRights International
2011년 3월

버마에서 석유, 가스, 채광, 수력발전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 부정적인 인권과 환경 영향이 충분히 완화되고 방지될 때까지 버마 내 투자나 프로젝트 공사를 중지할 것.
- 투자나 공사를 지속하기로 선택할 때 최소한 본문에 Shwe 기업들과 관련해 기술된 권고사항을 지킬 것.



국제 은행 및 금융기관에

- 관련법과 국제 모범 경영 기준에 따라 고객알기주의제도(Know-Your-Customer due diligence)와 의심되는 활동 보고와 응답제를 시행할 것.
- 반부패 및 돈세탁 관련 정책에 따라 정치적으로 노출된 버마인의 은행 계좌가 불법적 수익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 계좌 운영을 허용하지 않을 것.



국제사회에게

- 각국 정부와 민간 분야 안팎으로 정책조율을 추진해 버마의 천연자원 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돈세탁을 방지하는 데에 힘쓰고 특히 정보수집, 정보공유, 효과적인 예방조치에 중점을 둘 것.
- 버마에서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 및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들의 측근들이 국제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특히 자원개발산업과 연관된 개인이나 조직에 중점을 둘 것.



버마의 석유, 가스, 채광, 수력발전 분야에 공공투자를 하고 있는 정부들에게

- 상기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업에 대한 국가 지분을 조사하여 이 지분참여가 정부의 법적 의무 또는 투자 관련 윤리적, 환경 지침에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
- 자국 국내법이 기업의 국외활동에 대한 선명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도 있는 현지 포럼이 제공되지 않을 때 기업 모국에서 이를 제공하도록 할 것.



버마 석유, 가스, 채광, 수력발전 기업 투자자들에게

- 버마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활동 개선을 위한 명확하고 시간지향적(time-oriented) 벤치마크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영향, 활동과 관련한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할 것.
- 버마의 석유, 가스, 채광, 수력발전 분야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되도록 막을 것. 이미 버마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의 기업 책임성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고 공개된 환경 및 인권 영향평가, 인권 모니터링, 자발적 수익투명성, 그리고 종합적인 시민사회 참여를 중용할 것.
- 인권과 환경 보호, 법치, 투명성과 반부패 방침,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사전동의를 포함한 선주민 권리, 그리고 영향받은 지역사회의 권리를 추구하는 방침과 실행을 촉구하는 주주결의안을 지지할 것.
- 지급액 공개 (Publish What You Pay) 캠페인과 자원개발산업 투명성 확보 선언(EITI)의 목표와 목적을 증진할 것.



A briefer by EarthRights International
Washington, D.C. | Chiang Mai

www.earthrights.org

Arakan주에 있는 Maday 섬을 가로지르게 될 슈에가스 육상 파이프라인의 석유 저장시설 및 항구는 현재 중국 국영 석유공사가 석유 수송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 중입니다. 몇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 수송 프로젝트와 석유 수송 프로젝트를 동시에 언급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슈에 가스 프로젝트에만 해당된다고 잘 못 언급 하거나,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에 관한 사항을 슈에가스 프로젝트로에 관한 것으로 잘 못 언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일으켜 드린 점에 대해 EarthRight International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arthRights International (ERI) is a nongovernmental, nonprofit organization that combines the power of law and the power of people in defense of earth rights. We specialize in fact-finding, legal actions against perpetrators of earth rights abuses, training grassroots and community leaders, and advocacy campaigns. Through these strategies, ERI seeks to end earth rights abuses, to provide real solutions for real people, and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the communities where we work.